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 알림

1. 경장영양제 주성분의 허용 범위 확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를 '23.12.27.자로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 및 별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주무관 이지은 사무관 김희선 의약품정책과 전결 2023. 12. 27.
과장 안영진

협조자

시행 의약품정책과-13376 (2023. 12. 2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609 팩스번호 043-719-2606 / lje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